#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49

발의연월일: 2022. 8. 12.

발 의 자:정일영·김주영·주철현

김교흥 • 이성만 • 안규백

김병기 · 김병욱 · 김두관

신현영 · 노웅래 · 김승원

양경숙 · 강준현 · 이용우

송기헌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e-커머스가 확대되는 한편 코로나19 등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백신 등의 의약품과 식품의 전 세계적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냉장 운송 시장은 2019년 675억 5천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20.0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견 되고 있음.

정온물류 유통의 수요대상이 되는 물품 또한 식품과 의약품에서 각

종 화학공학 또는 화학소재, 반도체 등 정밀제품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정온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전물류 보관·수송·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과 장비등이 필요하지만, 국내 정온물류 주요기술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여 정온물류 기술을 개발·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와 같이 신선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57조 제1항). 법률 제 호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을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정온(定溫)으로 운송 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제57조제1항 중 "무선주파수인식"을 "무선주파수인식 및 정온물류(제2 3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행 아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 진) ①·② (현행과 같음) 진)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 ③ ------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제2 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 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신 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 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 를 추진하는 경우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정온(定溫) 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 ④ ~ ⑦ (생 략)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 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첨 단화물운송체계·클라우드컴퓨 팅·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이하 "물류 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 장비·운송수단(이하 "첨단물 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 ⑤ (생 략)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u>식품</u>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품목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
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u>무</u>
선주파수인식 및 정온물류(제23
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